

무선마이크 수입·제조·판매업체 안내문

700MHz 제품 제조·수입· 판매 금지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법 제58조의4 제1항에 따라 법적 이용기한이 지난 2013년부터 700MHz대역 무선마이크의 생산·수입·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전파법 제86조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700MHz 대역 제품 확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안내사이트를 개설하고, 700MHz 대역 제품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니, 각 업체에서는 www.spectrum.or.kr/wirelessmicrophone에 마련된 700MHz대역 무선마이크 등록창구를 통해 자사제품의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판매

무선마이크 제조·판매사에서는 700MHz대역 무선마이크 보상판매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요청 드리며, 보상판매를 실시하는 업체에서는 안내사이트를 이용해 보상판매 정보를 **이용자(판매 대리점 포함)에게 알리는 데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 마이크 협의회

미래창조과학부는 무선마이크 제조·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방안 수립 등을 위한 의견수렴·조율 기관으로 활동중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보상판매 및 무선마이크 협의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파진흥협회 사무국** (☎ 02-317-6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A

이상의 무선마이크 주파수 이용에 관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여기로 문의 하세요

※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 : **국번없이 1335**

무선마이크용 주파수 이용안내

무.선.마.이.크.이.용.제.도.가.이.렇.게.변.했.습.니.다.

2013. 8.



정부의 주파수 이용에 관한 법규 개정으로
740~752MHz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는
다른 주파수 대역의 무선마이크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왜

700MHz 주파수 대역(698~806MHz)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도 2008년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을 확정하면서, 무선마이크를 포함한 700MHz대역을 이용하던 기존 무선국의 이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까지로 고시하였습니다. (방통위 고시 제2008-13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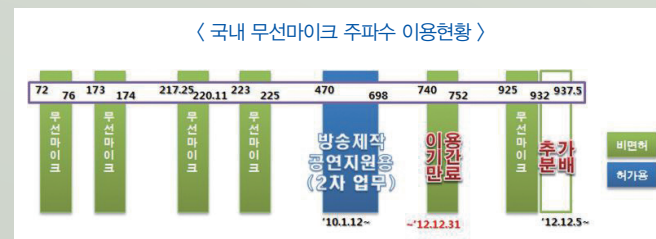


이에 따라 2013년부터 700MHz대역의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따라서 수입·제조·판매를 금지하고, 관련 업계의 이용종료 안내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기존에 700MHz대역의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700MHz대역을 특정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는 계도기간을 가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시점은 아직 미정(2015년 이후로 예상)이지만, 계도기간 종료 3개월 전에 보도자료 등을 통해 추가로 안내될 예정이오니,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반드시 다른 무선마이크로 교체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무엇을

아울러 2013년부터 이용이 종료되는 무선마이크는 700MHz대역(740~752MHz)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만 해당되며, 다른 대역(70MHz대역, 170MHz대역, 200MHz대역, 470~698MHz대역, 900MHz대역 등)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작 주파수 확인방법은 '이용자 안내문'란을 참고하세요)



700MHz대역 제품은 이용을 중지하시고,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700MHz대역, 170MHz대역, 200MHz대역, 470~698MHz대역, 900MHz 대역 등의 제품을 구매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2.12.5. 일자로 900MHz 무선마이크용 주파수 대역 폭을 기존 7MHz폭(925~932MHz)에서 12.5MHz폭(925~937.5MHz)으로 확대하여 충분한 주파수를 공급하였으니, 신규 제품 구매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무선마이크 이용제도 소개

주파수
분배표

○ K37D

219,150MHz, 219,175MHz, 219,200MHz 및 219,225MHz의 주파수는 음성호출로 사용할 수 있고, 72,610~73,910MHz, 74,000~74,800MHz, 75,620~75,790 MHz, 173,020~173,280MHz, 173,300~174,000MHz, 216,000~217,000MHz, 217,250~220,110MHz, 223,000~225,000 MHz 및 925~937.5MHz의 주파수대역은 특정소출력무선기(음성 및 음향신호전송용)로 사용할 수 있다.

※ 무선마이크 주파수분배 대역 중 740~752㎐대역 삭제 (방통위고시 제2012-100호, 2012.12.5)

K77H

470~698MHz 대역은 방송 업무가 우선하므로 유해한 간섭을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선마이크, 음향신호전송 등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K91

942~959MHz의 방송중계를 위한 고정국용 주파수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고, 이후에는 1.7GHz대역 또는 방송중계용으로 지정된 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950~959MHz에서 사용중인 방송중계용 주파수는 2011년 3월 31일까지만 사용을 허용한다. 942~950MHz의 주파수대역에서 운용중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무선마이크는 2009년 6월 30일까지 형식등록을 할 수 있고, 2015년 6월 30일까지 새로이 정해진 주파수 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 위 규정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ld.kcc.go.kr : 홈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 '분배표'로 검색)

허가용?
비면허용?

국내 전파법에 따르면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선기기의 출력이 매우 낮은 경우나 특정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등 다른 무선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기들에 대해서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무선기기는 법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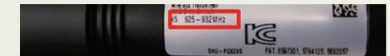
그 중 무선마이크는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신호를 전송하는 무선기기로서, 사용하는 주파수에 따라 **허가예, 470~698MHz대역 무선마이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하는 것과 **비면허예, 925~937.5MHz대역 무선마이크**로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적합성 평가를 받은 무선마이크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허가용 무선마이크는 허가·준공검사 등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중 정기적인 검사와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면, 비면허 무선마이크는 이러한 절차와 의무를 간소화(생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마이크 **이용자** 안내문

사용하고 계신 무선마이크의 동작주파수 확인은 아래 방법을 따라해 보세요.

- ❶ 제품 표면에 부착된 **스티커** 또는 **제품설명서**를 확인해 보세요.



- ② 제품의 송신기 또는 수신기의 LCD창에 표시되는 동작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③ 제품을 구입하신 업체나, 제조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 ④ 국립전파연구원의 인증기기 등록DB(rra.go.kr/board/device/search.jsp)를 검색해 보세요. 검색창에 **모델명 또는 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형식기호’란에서 주파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5 무선마이크 정책 안내 사이트(www.spectrum.or.kr/wirelessmicrophone)에
게시된 700MHz대역 제품 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보상 및
지원**

현행 전파법(제7조)상 주파수 회수·재배치시 **손실보상 대상은 허가·신고·사용승인**을 받은 무선국으로 한정되어, 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하는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정부에 의한 손실보상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는 **무선마이크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보상금**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무선마이크 협의회 등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에 나날 예정입니다.

※ 보유하고 계신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의 보상판매 가능 여부는 제조사나 판매업체, 또는 무선마이크 정책 안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안내 사이트에는 보상판매를 추진하는 일부 업체만 게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꼭 알아두세요

계도기간 종료시점은 아직 미정(2015년 이후로 예상)이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700MHz대역 무선마이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전파법 제9조 제4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기한 내 교체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안내 사이트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두시면, 계도기간 종료에 관한 정보 등 무선마이크 관련 정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